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4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22년(네) 제10039, 10056호
판결 일자	2011. 9. 27.	판결 결과	원고(항소인) 승
원고 (항소인)	이데미츠홍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비시공업 등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8호, 4조, 민법 709조		
영업 비밀	PC(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제조 기술 석유화학분야)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산정		

02 사건 개요

석유 정제 업체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제조와 관련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중국 남성(집단)총공사에 제공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등과 손해배상 2억9700만 엔을 청구한 사건

1심 (도쿄지방법원)은 이 사건 PC플랜트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들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한해 침해금지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도 1100만 엔만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본건 PC수지 제조 기술은 유용한 정보이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가 비밀로 관리하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이 부정 공개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중국 회사에 공개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2억7천만 엔과 원고가 대만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는 4억 2천여만 엔이다.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외에는 특별한 감시 장치가 없고, 보관함은 열쇠로 잠겨있지 않았고, 관리 대장이나 담당자, 관련 절차나 규정도 없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중대한 과실도 없다.

피고가 받은 이익은 없으며, 변호사 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04 판결 요지

본건 도면이나 도표 등에 기재된 PC수지 제조방법은 영업비밀로서의 유용성이 있으며, 관련 기술은 전 세계 8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어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본건 도면이나 도표, 전자데이터(CAD)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반출금지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정보임을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본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도면을 중국 회사(남성공사)에 제공한 것은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를 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고, 현재에도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3조1항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금지 및 관련 기록매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본건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해제되어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황에 높이가 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기술 제공시 고정금액으로 결정된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9700만 원을 지급하라.

05 Key Point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 보호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며, 이 사건도 비밀관리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평상시 영업비밀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경우, 유출 경로 및 피고들의 취득 경로, 방법,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입증은 중요하며, 또한 손해배상액 입증을 위해 원고가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받고 있는 기술료 등에 준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